

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

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라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.

인 천 광 역 시 장

1 사업목적

-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·육성하고자 함

2 공모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
- 공모기간 : 2023. 11. 2.(목)~2023. 11. 17.(금)
- 공모분야 : 2회차(재지정), 3회차(고도화)
- 신청대상 : 공고일 기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기업 지정(운영)요건*을 모두 충족한 법인

* 지정(운영)요건 :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

○ 지원내용

- 사업비 지원

구 분	2회차(재지정)	3회차(고도화)	비고
지 원 액	3천만원	2천만원	

※ 마을기업 자부담 : 보조금의 20%이상(청년 마을기업은 10%이상)

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
-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영컨설팅
-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

3

신청자격

- 2회차(재지정) : 공고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
 - 운영실적이 우수하며,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
- 3회차(고도화) : 공고일 기준 1·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
 -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

《 신청자격 》

- 1) 조직형태 :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*
 - * 법인 :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·영어조합법인 등

2) 설립 및 운영요건

- 회원은 최소 5인 이상(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)
- 모든 회원은 신청 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며, 최대한 동일한 비율로 출자 노력
- *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% 이하,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은 50%이하
- 회원의 70%이상은 지역주민(총 회원이 5인인 경우, 5인 모두 지역주민)

◆ 지역의 범위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

- '읍·면·동'을 기본으로 함(행정동 기준,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)
-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예외적으로 '시·군·구'까지 확대하고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8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단, '인구감소지역'은 주민(시·군·구 기준)이 회원의 70% 이상 포함되어야 함
 - '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, 중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·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*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,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

-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(고용 인력의 70%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권장)

3) 필수교육 사전이수

- 2회차(재지정) : 회원 5인 이상(대표자 필참) 전문교육 4시간
- 3회차(고도화) : 회원 5인 이상(대표자 필참) 전문교육 4시간 권장

※ 교육이수효력 : 교육 마지막날로 부터 만 2년(고도화 만 1년)으로 시 심사일 현재 효력유지 必

《 관련 특례 》

□ 청년*마을기업

- (요건) 지역주민 5인 이상+지역주민 비율 50% 이상+청년비율 50%**
- (특례) 자부담 경감(20%→10%), 주민비율 완화(70%→50%), 심사 가점(3점)
- *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1호 : '청년'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
- ** 2022.12.31. 기준 시군구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

□ 인구감소지역

- (대상) 강화군, 옹진군
- (특례) 우선 선정 가능,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(80%→70%)
- ※ 기존에 정보화마을로 운영하다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우선 선정 가능

4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
-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
 - 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-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
 -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
 -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
 -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
 - ※ 신규·재지정·고도화 마을기업, 재도약, 우수 및 모두에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
 -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
5 신청서류

구분	신청서류	
기본 서류	공통 (1)	① 사업신청서(서식1) ② 회원 명단(서식2)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(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- (서식3) "단체·법인(마을기업) 출자자(회원) 명단 및 출자금 현황" 활용 제출 가능 ④ 주주 및 조합원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(지역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 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⑤ 법인등기부등본(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⑥ 법인 정관 사본 ⑦ 법인 회의록(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) 사본 ⑧ 자부담 통장(자부담내역 정리) 사본 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- (서식4) "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" 활용 제출 가능
	추가 (2)	2회차 ① 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② 실적보고서(서식5), 정산서류(1회차)*, 재무제표(전년도), ③ 고용인력 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) 3회차 ① 실적보고서(서식4), 정산서류(2회차)*, 재무제표(전년도) ② 고용인력 증빙서류(4대보험 가입증명 및 주민등록 내역)
기타 증빙 서류 (3)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(계약기간 명시)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(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)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,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(법인 회의록, 보조금 관련 서류 등)	

6 신청접수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23. 11. 13.(월) 09:00 ~ 2023. 11. 17.(금) 18:00
-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군·구(마을기업 담당부서)
- 접수방법 : 군·구 방문접수 ※우편접수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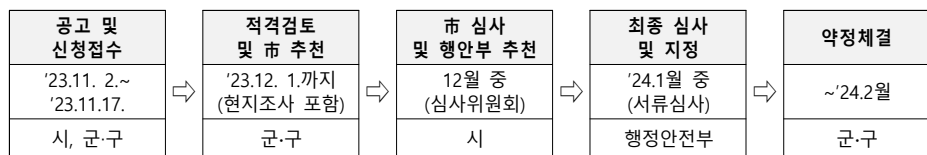
7 선정방법

- (군·구) 신청기업 적격검토
 -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현지조사 실시
 -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또는 제외대상 해당여부 등 적격 검토
- (시) 지정 요건 등 심사
 - 심 사 일 : 2023. 12월 중
 - 심사내용 : 지정요건 충족여부, 그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
- (행정안전부) 최종 심사 및 지정
 - 심 사 일 : 2024. 1월 중
 - 심사내용 : 시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최종심사

8 결과통지

- 통지방법 : 군·구를 통해 통보
 - 마을기업 市 심사결과 : 2023. 12월 중
 -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: 2024. 1월 중

9 추진절차



10 유의사항

-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제반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신청자의 부담이며,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(행정안전부)」에 따릅니다.

11 문 의 처

- (교육 및 컨설팅)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

기 관 명	전화번호	주 소	비 고
청운대 산학협력단	766-8313	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734호	

- (신청서 접수) 군·구 담당부서

기 관 명	담당부서	전화번호	주 소	비 고
강 화 군	경 제 교 통 과	930-3353	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(관청리)	
용 진 군	지 역 경 제 과	899-2512	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(용현동)	
중 구	총 무 과	760-7168	중구 신포로27번길 80 (관동1가)	
동 구	일 자 리 경 제 과	770-6178	동구 금곡로 67 (송림동)	
미 추 홀 구	일 자 리 정 책 과	880-7910	미추홀구 독정리로 95 (송의동)	
연 수 구	일 자 리 정 책 과	749-8465	연수구 원인재로 115 (동춘동)	
남 동 구	일 자 리 정 책 과	453-2494	남동구 소래로 633 (만수동)	
부 평 구	일 자 리 창 출 과	509-7488	부평구 부평대로 168 (부평동)	
계 양 구	일 자 리 정 책 과	450-6773	계양구 계산새로 88 (계산동)	
서 구	일 자 리 창 출 과	718-1885	서구 서곶로 299 (심곡동)	

- (기타문의)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, ☎ 440-4963